

고 시

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3-11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3월 20일

서울전파관리소장

1. 대 상

번호	별정통신사업 등록번호	상호
1	제111158호	(주)엔오원미디어

2. 처 분 내 용 :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-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를 위반하여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조사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함

4. 근 거 법 령 :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

5. 처 분 일 자 : 2013. 3. 20.